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도읍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149
----------	-------

발의연월일 : 2022. 4. 7.

발 의 자 : 김도읍 · 구자근 · 권명호
김상훈 · 김성원 · 김태흠
신원식 · 양금희 · 정동만
추경호 · 태영호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이어야 함.

그런데 국가유공자 등이 받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등은 소득에 포함되기 때문에 국가유공자 등은 생계급여가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권자가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유공자 등은 국가에 헌신한 공로에도 불구하고 보훈급여금 등을 포기하거나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하는 선택의 기로에 처하게 되는 실정임.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을 이전소득에서 제외함으로써 국가유공자 등의 생계 보장을 강화하

려는 것임(안 제6조의3제1항 제4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이전소득.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은 제외한다.

부 칙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제2조제9호에 따른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개별가구의 실제 소득에도 불구하고 보장기관이 급여의 결정 및 실시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다음 각 호의 소득을 합한 개별가구의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등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그 밖에 추가적인 지출요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산정한다.	제6조의3(소득인정액의 산정) ① ----- ----- ----- ----- ----- ----- ----- ----- -----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u>이전소득</u>	4. <u>이전소득</u> .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② · ③ (생 략)	<u>지급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은 제외한다.</u> ② · ③ (현행과 같음)
-------------	--